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9
----------	----

2018년 9월 5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8년 8월 16일, 서울특별시장
- 나. 회부일자 : 2018년 8월 21일
- 다. 상정일자 : 제283회 임시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2018년 9월 5일 상정, 원안가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배광환 물순환안전국장)

### 가. 제안이유

-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한강수질개설특별회계의 존속 기한을 명시하고, 그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 법률 제12687호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에 따라 조례에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2018년 12월 31일을 존속기한으로 봄
- 그 밖에 이탈자 등을 정비하고자 함.

## 나. 주요내용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하는 존속기한 조항을 신설함(안 제3조의2).
- 탈자, 약칭 및 문장부호 등 조문을 정비함.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나. 예산조치: 해당없음

다. 기타

- (1) 입법예고(2018. 7. 5. ~ 7. 25.) 결과: 의견 없음
- (2) 신·구 조문 대비표: 별도 붙임
- (3)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별도 붙임

## 4. 검토보고요지(수석전문위원 이상근)

### ■ 개요

- 본 개정안은 「지방재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명시함으로써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운용을 2023.12.31.까지 연장하고, 법제처의 「알기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오탈자 및 약칭, 문장부호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표 1] 개정안 주요골자(안 제3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신설>	제3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sup>1)</sup>에 따라 잠실상수원 수질개선사업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확보하고,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1999.11.15.일 설치된 것임.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세외수입(이자수입)과 보전수입(잉여금 등), 그리고 국고보조금으로 구성되며,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세입액은 228억 94백만원임([표 2] 참조).

1) 제16조(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 등에 드는 사업비를 확보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특별회계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관리·운영한다.

[표 2]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합계	13,713	18,857	21,506	30,813	29,579	22,894
세외수입 (이자수입)	14	32	17	87	208	72
보전수입 (잉여금 등)	788	929	2,228	2,304	3,530	1,956
보조금 (국고보조금)	12,911	17,896	19,261	28,422	25,841	20,866

- 다음으로 세출 현황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평균 지출액은 207억 3백만원으로, 이는 예산액 대비 89.2% 수준임 ([표 3] 참조).

[표 3]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평균
예산액	15,581	19,154	20,609	30,900	29,745	23,198
지출액	12,783	16,629	19,202	28,434	26,468	20,703
집행잔액	2,798	2,525	1,407	2,466	3,277	2,495

## ■ 주요 골자별 의견

### 가. 존속기한 설치(안 제3조의2 신설)

- 안 제3조의2는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14.5.28. 일 개정된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3항과 부칙 제4조에 근거하여 존속기한(2023.12.31.)을 조례 본문에 명시하려는 것임.

※ 「지방재정법」의 특별회계 존속기한 관련 규정 (2014.5.28.신설)

제9조(회계의 구분)

- ③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면 5년 이내의 범위에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 제4조(특별회계에 관한 적용례 등)

- ② 이 법 시행 당시의 특별회계로서 제9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존속기한을 정하여야 하는 특별회계 중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 및 존속기한이 2018년 12월 31일을 초과하여 정하여진 특별회계는 2018년 12월 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

- 2014.5.28.일 개정된 법(법률 제12687호) 제9조제3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특별회계를 설치하는 경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법 부칙 제4조제2항은 ‘해당 조례에 별도로 존속기한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특별회계는 2018.12.31.일을 그 존속기한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1999.11.15.일 제정된 본 조례의 경우 법 부칙 제4조제2항에 해당하고 그에 따라 법정 존속기한이 2018.12.31.일이기 때문에 이후에도 본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있을 경우 본 조례에 존치기한을 새로이 규정해야 하는 것임.
-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의 그동안의 역할과 실적을 살펴보면, 설치 이후 지금까지 잠실상수원 지역의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사업, 그리고 한강수계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용 등을 위해 활용되어 왔음 ([표 4] 참조).

[표 4]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합계	12,687	14,284	22,430	21,677	21,766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	150	1,369	941	988	1,037
◦함계서울 친환경농장 가꾸기	565	565	565	565	560
◦강동 친환경 도시텃밭 운영	143	143	143	144	140
◦상수원수질개선 민간단체 지원	221	231	222	231	231
◦환경기초시설 설치	3,400	4,269	12,578	11,099	11,099
◦환경기초시설 운영	7,899	7,381	6,662	6,662	6,351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	141	142	142	134	127
◦잠실상수원 관리				702	818
◦수질오염총량관리 사업	168	184	186	401	611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			991	603	573
◦기금사업관리비				0	19
◦한강상수원 퇴적물 분포 연구				0	200
◦수질자동측정 감시장치설치				148	0

※ 예산 편성액 기준

- 2001년부터 매년 평균 약 2만톤의 준설을 통해 잠실상수원의 수질개선과 원활한 취수 및 수돗물 공급 안정성을 확보해 왔고, 13,300구획(255,566㎡)의 도시텃밭을 운영함으로써 수질오염원 발생을 사전예방 하는 한편, 상수원 주변 순찰 및 단속 인력을 통해 한강변 쓰레기를 매년 약 600톤가량 수거·처리하는 등 의미 있는 성과를 올린 것으로 평가됨.
- 따라서 1천만 서울시민의 식수원인 잠실상수원의 수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를 통해 관련 목적사업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고,

- 이에 본 개정안이 존속기한을 2023.12.31.로 명시하려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조치라 여겨짐.

나. 기타 용어정비 등(안 제1조, 안 제3조, 안 제4조제1항제3호)

- 안 제1조, 제3조 그리고 제4조제1항제3호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오탈자, 약어규정 및 문장부호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음.

5.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소위원회의 심사보고 요지 : 해당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목 “(목적”을 “(목적)”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을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로 하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수질개선특별회계”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관리·운영)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존속기한)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1조(목적) <u>잠실상수원 수질개선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한강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3조(관리·운영) <u>회계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u></p> <p style="margin-left: 20px;">〈신설〉</p> <p>제4조(세입) ①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 style="margin-left: 20px;">1.·2. (생략)</p> <p style="margin-left: 20px;">3. <u>법 제20조에 따른 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u></p> <p style="margin-left: 20px;">4.·5. (생략)</p>	<p>제1조(목적)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u>수질개선특별회계</u> -----.</p> <p>제3조(관리·운영) <u>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시장이 관리·운영한다.</u></p> <p>제3조의2(존속기한) <u>회계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u></p> <p>제4조(세입) ① -----.</p> <p style="margin-left: 20px;">1.·2. (현행과 같음)</p> <p style="margin-left: 20px;">3.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0조에 따른 <u>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u></p> <p style="margin-left: 20px;">4.·5. (현행과 같음)</p>